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

2026. 7. 30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

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
2. 근거: «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» 제6조,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, «행정절차법»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송0우	2003.4.25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연락두절 및 2차례 출석통지 후 의견제출 반송	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	익산시 익산대로 74길 12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6. 7. 30. ~ 2026. 8. 13. 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노소정(063-270-904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